

문서번호	여성가족과-1610
등록일자	2026. 1. 15.
결재일자	2026. 1. 15.
공개여부	대국민 공개

주무관	여성정책담당	여성가족과장			
유민주	최은영	전결 2026. 1. 15. 손순미			
협조자					

2026년 여성결혼이민자 · 다문화청소년 기술 취득비 및 국적취득비 지원 계획

개 요

○ 큰 거

-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4조(지원사업) 및 제16조(예산지원)

○ 시 행: 2026. 1. ~ 예산 소진 시 까지

○ 사 업 비: 9,000천 원 (시비 100%)

(국적취득비 지원: 3,000천 원, 기술취득비 지원: 6,000천 원)

○ 사업대상: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

○ 사업내용

- 국적취득비 지원: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지원(1인당 300천 원)
- 기술취득비 지원: 공인자격증* 취득비 지원(1인당 400천 원 이내)

* 운전면허, 요리, 미용, 요양보호사, 컴퓨터 관련 등



밀 양 시
(여성가족과)

여성결혼이민자·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및 국적취득비 지원 계획

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에게 기술취득비 및 국적취득비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·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하여 지역 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

I 추진배경

- 여성결혼이민자 인구 증가 및 정착 장기화에 따른 사회·경제적 참여 지원 필요1)
- 밀양시 결혼이민자 수 ('22년) 683명 ⇒ ('23년) 743명 ⇒ ('24년) 771명
- 밀양시 다문화자녀 수 ('22년) 806명 ⇒ ('23년) 843명 ⇒ ('24년) 872명
- 다문화가족 정착 주기 장기화 및 다문화 학령기 자녀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 필요2)

< (결혼이민자·귀화자) 국내 거주기간 분포 >

(단위: %)

구분	5년 미만	5~10년 미만	10~15년 미만	15~20년 미만	20년 이상
2021년	12.1	19.2	28.9	22.2	17.7
2024년	7.4	16.6	23.4	24.3	28.3

- (거주기간) 15년 이상 장기 국내 거주자의 증가 ('21년 39.9%→'24년 52.6%)
- (성장배경) 만9~24세 중 국내에서만 성장한 비율 증가 ('21년 90.9%→'24년 92.5%)
- ⇒ 학습지원, 진로상담, 교육에 대한 서비스 수요 증가

II 추진계획

- 추진근거: 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 제3조 및 『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』 제4조
- 사 업 비: 9,000천 원 (시비 100%)
 - 국적취득비 지원 3,000천 원, 기술취득비 지원 6,000천 원
- 사 업 량: 25명 (국적취득 10명, 기술취득 15명)

1)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(2025)

2)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최종보고서

○ 사업대상

- 국적취득비(여성결혼이민자)
- 기술취득비 (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)

○ 사업내용

- 기술취득비: 학원·강의 수강료 지원(1인당 400천 원 이내)
- 국적취득비: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지원(1인당 300천 원)

※ 다문화가구 현황

(단위: 명, 202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)

계	결혼이민자 및 귀화자			다문화 자녀				비 고
	소계	결혼이민자	귀화자	소계	귀화 및 외국국적	국내출생	기타	
1,624	771	350	421	853	20	833		

※ 다문화자녀 현황

(단위: 명, 202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)

계	미취학	초등학생	중학생	고등학생	비 고
872	250	284	169	169	

○ 신청장소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및 밀양시 가족센터

III

사업개요

□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

- 소요예산: 6,000천 원
 - 사업량: 400천 원 × 15명
 - 지원대상: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·중도입국 청소년
 -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 -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*을 (운전면허, 조리사, 요양보호사, 컴퓨터 등 취업 연계) 취득한 자
- * 일반학원, 사설 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단순 수료증 및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 등은 제외

※ 타 시군에 거주 중 취득한 자격증 또는 취득한 자격증이 타 시·군에서 직·간접적 지원 혜택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

※ 다문화·중도입국 청소년

- 다문화가족 자녀 및 국내 출생이 아닌 자녀가 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중도에 입국한 경우
예) 국내 출생 다문화가족 자녀, 국제결혼 이후 본국의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, 재외동포 국내 이주로 인한 동반 및 시간차 입국 이주노동자 및 난민 자녀 입국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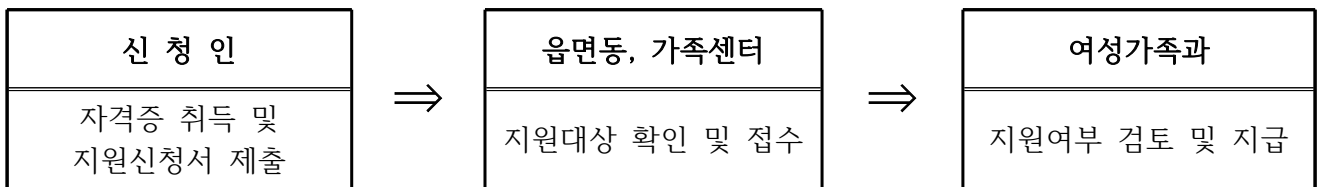
※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 지원 현황

(단위: 명/천 원)

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	비 고
지원실적	13명/5,200천 원	15명/6,000천 원	14명/5,600천 원	

○ 지원내용: 1인당 1개 자격증에 한해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실비 지원

○ 지원절차

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 1부.
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.
- 자격증 사본 1부.
-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(귀화자) 1부.
- 가족관계증명서 1부.
- 주민등록 초본(이전 주소지 내역 명시)(귀화자) 1부.
- 이용 학원·강의 수강 증명서 및 수강료 납입 영수증 등 1부.
- 통장 사본 1부.

□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

○ 소요예산: 3,000천 원

○ 사 업 량: 300천 원 × 10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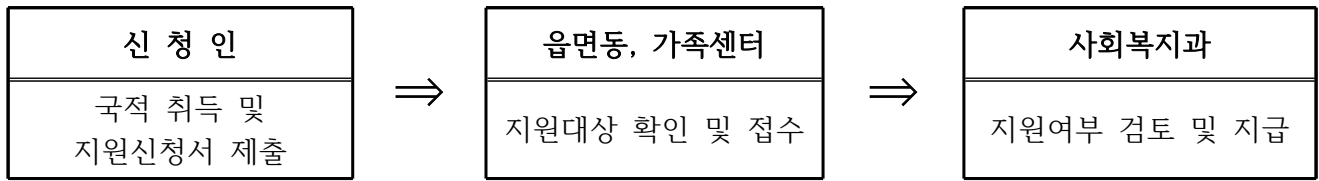
○ 지원대상: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

-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(귀화)한 자
-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
※ 지원제외: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해당되는 수수료 면제대상 및 기타 유사중복지원 대상자

○ 지원내용: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

○ 지원절차



※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현황

(단위: 명/천 원)

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	비 고
지원실적	9명/2,700천 원	6명/1,800천 원	7명/2,100천 원	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 1부.
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.
- 수수료 납입 영수증 1부.
-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.
- 주민등록등본 1부.
-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(주소이력 포함) 1부.
- 혼인관계증명서 1부.
- 통장사본 1부.

IV 기대효과

- 여성결혼이민자 사회·경제적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
- 다문화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도모

붙임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. 끝.

